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925호  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5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김정일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25년 4월 11일 |

#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25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5년 4월 11일

발 의 자: 김정일·이정범·유상용

김성대·박병천·박봉순

박진희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,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 삭제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6조~안 제10조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불임
- 나. 비용추계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관계부서 협의: 창의특수교육과

##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내”를 “조례는 충청북도내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0조의8에 따라”를 “이란”으로 한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.)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기본계획 수립)”을 “(기본계획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해마다”를 “매년”으로, “기본계획”을 “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충청북도교육청”을 “교육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6조로 하고, 제6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

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)”를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”로, “아니”를 “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충청북도교육청”을 “교육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관계관”을 각각 “관계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정보화 교육”을 “정보화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위촉직”을 “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”으로, “하며,”를 “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의 제목 “(위원회의 기능)”을 “(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한다.

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6항을 삭제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위원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적 위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, “개의(開議)하고”를 “개의하고”로

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경우에는**”을 “**경우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제4조**”를 “**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제4조**”로, “**심의를**”을 “**심의의 경우**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정보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

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의 제목 “(**센터 활용**)”을 “(**관련시설 등 활용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**도지사**”를 “**충청북도지사**”로, “**‘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’와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’**”를 “**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**”으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의 제목 “(**거점학교의 지정·운영**)”을 “(**중점학교의 지정·운영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위하여 교육지원청에**”를 “**위하여**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 조례는 충청북도<br>내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급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.        |
|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“인터넷중독 예방교육”이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| 3. ----- 이란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              |
| 4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과 그 소속기관(「유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적용범위) -----<br>-----<br>----- 「유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육법」 제2조의 유치원과 「초  
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 
포함한다.)에 적용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충청북  
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  
다)은 해마다 정보화교육에 관  
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 
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5조(전담부서 설치) 교육감은  
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  
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 
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교육감은  
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  
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  
보화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  
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 
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 
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  
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  
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 
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 
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

육법」 제2조의 유치원과 「초  
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 
를 포함한다)-----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 -  
-----  
--- 매년 -----  
--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  
라 한다)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전담부서 설치) -----  
-----  
----- 교육청-----  
-----.

제7조(위원회 구성) <삭 제>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 경우 -----  
-----  
----- 안 -----.

③ -----  
-----

위촉하되, 교육감 소속 공무원  
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  
과할 수 없다.

1.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, 창  
의특수교육과장, 충청북도교  
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

2. 정보화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 
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및 전  
문가, 교사, 공공기관, 단체 및  
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

3.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 
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 
학술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

4. 그 밖에 정보화 교육에 관하  
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 
람

④ (생 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 
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
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  
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  
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 
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 
되,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  
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  
관으로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1. 교육청 -----  
-----  
-----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관계자

3. -----  
-----  
----- 관계자

4. ----- 정보화교육-----  
-----  
--

②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 
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-----  
-- 하고 -----  
---. <단서 삭제>

<삭 제>

<신 설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<신 설>

위원회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  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
한다.

1. 2. (생 략)

제8조(회의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 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  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
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  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 
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  
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 
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  
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 
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 
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설  
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정보  
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
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 
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 
라 한다)를 둔다.

② --- 다음 -----  
-----  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재적위원 --  
----- 개의하고 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

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제10조(센터 활용)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‘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’와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’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.

제11조(거점학교의 지정·운영)

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중점학교

경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제4조-----  
----- 심의의 경우 -----  
-----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정보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

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1조(관련시설 등 활용) -----  
----- 충청북도  
지사-----  
--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 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---  
-----.

제12조(중점학교의 지정·운영)

① -----  
위하여 -----

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2조 (생략)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#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

## 3. 미첨부 사유

「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알기 쉬운 법령  
정비 기준」 등에 따른 조문 정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 4. 작성자: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